

# 충청북도 '문화 소비 365 사업' 가맹점 운영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충북 문화 소비 365'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관리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부정결제"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결제 행위로 부당하게 캐시백 혜택을 수령하거나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비정상적 현금 유통(부당 현금화)"란 실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결제만 진행하거나, 결제 취소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행위를 말한다.

## <제2장 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요건)** 1. 가맹점은 충청북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둔 업체로서, 재단이 정한 문화예술 관련 업종(공연, 전시, 관광, 문화체험, 문화교육, 도서, 영화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 및 재단의 공공 문화예술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둔 업체라도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2. 가맹점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농협카드 등)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관련 상품(서비스)의 비중이 일부가 아닌 대부분(90% 이상)으로 취급(운영)하는 업소 또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제4조 (가맹점 의무)** 1. 가맹점은 결제 시 이용자가 본 사업의 대상자(충북도민이며 NH농협카드 소지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은 전화결제 및 수기 결제(키인 결제)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상적인 단말기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3. 가맹점은 주소지, 사업자번호, 가맹점 번호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정보변경 신청 후 신청 정보 적용 절차 완료 때까지의 해당 가맹점 결제 건은 캐시백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

## <제3장 부정결제 금지 및 모니터링>

**제5조 (금지 행위)** 가맹점과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 외 결제 : 영화관 매점(식료품), 서점 내 문구류 등 문화예술 서비스와 무관한 상품을 결제 대상에 포함하는 행위
2. 분할 결제 : 캐시백 한도 적용을 회피하거나 수치를 조작하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 나누어 결제하는 행위
3. 허위 결제 :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만 발생시키거나, 가족·지인 명의의 카드를 회수하여 대리 결제하는 행위
4. 미승인 거래 : 휴·폐점 상태에서 결제를 진행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온라인 경로로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제6조 (이상 거래 모니터링)** 재단과 협력 금융기관(농협카드)은 결제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된 가맹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제재 및 사후 조치>

**제7조 (가맹점 제재 기준)** 재단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 자격을 즉시 해지하거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용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생필품 등)을 판매하거나 포함하여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가맹 해지)
2. 고의적 결제 거절 또는 문화 소비 365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등 문화 소비 365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3. 부당거래(현금화) 등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된 경우
4. 점검 시점 기준으로 문화 소비 365로 구매가 허용되는 상품(서비스)의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5. 휴·폐점한 가맹점
6. 가맹점주가 직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7. 가맹점 정보변경 신청을 제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하지 않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8. 그 외 본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된 경우

**제8조 (캐시백 환수 및 배상)** 1. 부정결제로 확인된 경우, 재단은 해당 이용자에게 지급된 캐시백을 전액 환수한다.

2. 부정결제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가맹점에 대해 재단은 이용자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재단이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제9조 (법적 대응)** 사안이 중대하여 공공 예산의 손실이 명백하거나 조직적인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및 기타)** 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충청북도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 기타 가맹점 신청, 정보변경, 현장 점검 등 제반 행정절차는 재단이 제시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한다.

## [별첨]

### 【가맹점 등록 가능 업종 및 품목】

- ▶ 문화소비 365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을 일부가 아닌 대부분(90% 이상)으로 취급(운영)하는 업소 또는 사업자
- ▶ 아래 업종 및 품목에 해당할 시, 가맹 등록 가능(필요시 현장방문)

분류	업종 또는 품목
공연	공연장(온라인예매처),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문화예술회관, 관련 축제(행사) 등의 공연 행사
전시	미술관, 박물관, 공예관, 문학관, 과학관, 기념관, 화랑, 비엔날레, 전시관 등 시설 내 체험 프로그램, 시설 내 기념품(작품), 관련 축제(행사) 등
영화	충북 내 모든 영화관, 관련 축제(행사) 등 ※영화관람 외 상품은 제외(식료품 등)
도서	지역 소재 서점에서 도서 구입
문화체험	문화체험(공방, 전통문화, 문화센터 / 체험비, 재료비, 상품), 음반, 화방, 악기(악기 부속품), 문화유산관람, 관련 축제(행사)
문화교육	지자체 및 대학 등 공공기관 운영 평생학습관(원) 문화예술강좌 수강, 민간 운영 문화예술교육시설 강좌 수강 등
관광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테마파크, 관광숙박업 등
스포츠관람	프로스포츠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 【문화체험】

-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문화예술 해당 분야(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출판, 민화, 뮤지컬 등)
-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한 공예 분야
- ③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문화

#### 【문화교육】

문화체험의 관련 분야만 해당하며 사업체(시설)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된 사업체(시설)는 제외

#### 【관광】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숙박(한국 관광 품질인증업소)만 해당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항목]

구분	모니터링 대상 기준(이상 징후)	조치사항
결제 패턴	동일 가맹점에서의 짧은 시간 내 다수 결제(분할 결제)	가맹점 현장 점검 및 소명 요청
시간/장소	영업시간 외(심야 등) 또는 비상식적 시간대 결제	결제 내역 상세 소명 요구
금액 편중	가맹점 평균 단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 고액 결제	증빙 자료(영수증 등) 제출 요구
이용자 밀집	특정 시간대 동일 카드 이용자의 반복적 방문/결제	부정 결제 의심 시 이용 제한
가맹점 특이사항	특정 시점 갑작스러운 매출 급증(데이터 이상치)	정기 가맹점 점검 대상 선정